

건물 임대차 계약서

아래 표시물건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<u>삼성전자주식회사</u>(이하"갑"이라 칭한다)와 임차인 (기) 이 및 (이하 "을"이라 칭한다)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.

제 1조【계약자】

"감":

京畿道 龍仁市 器與邑 農書理 山24番地

三星電子株式會社

(T表理事于 鍾 於

"을":

株式合社の上の代表の下文常常

제 2조【계약일】 >100 년 4월 / 일

제 3조【임대 건물의 표시】 기흥등 실시기 /2위 비리 4두 2동 1층 (35년)

제 4조【임대보증금 및 임대료】

① "갑"은 위 표시 사무실(이하 "임대사무실"이라 한다)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"을"에게 임대한다.

	임대보증금	임대료(月)
금액(원)	없음	60.000

② "을"은 당월분 임대료 및 부과세를 익월 10일까지 회입하여야 하고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.

제 5조【임대사무실의 계약기간】

- ① 임대사무실의 계약기간은>>> 5년 4월 /일~>>04년 3월 3/일까지로 한다.
- ②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통보가 없는 한 본 계약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1년간 자동연장 된다.

제 6조【임대료의 계산】

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.단, 임대기간이 월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임대로는 일단위로 산정한다.





② 입주당월의 임대료는 일주일부터 기산한다. 단,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한다.

제 7조【임대조건 등의 변경】

"갑"과 "을"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, 임대료, 관리비 또는 사용료 및 제 납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.

- ①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
- ② "갑"이 임대하는 사무실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사무실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
- ③ 임대사무실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약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

제 8조 【"을"의 금지행위】

"을"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사무실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
- ② 임대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,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
- ③ 임대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
- ④ 기타 임대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, 관리를 위하여 "갑"과 "을"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
제 9조 【"을"의 수인의무】

"을"은 임대사무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10조【임대사무실 관리의 범위】

위 사무실의 공동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설은 "갑" 또는 "갑"이 지정하는 건물 관리업자가 관리하고, 사무실과 그 내부시설은 "을"이 관리하다.

제 11조 【보수의 한계】

- ① 위 사무실의 보수 및 수선은 "갑"의 부담으로 하되, 위 사무실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"을"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"을"의 부담으로 한다.
- ② 임대 물건의 가본적 가치증대를 위한 보수는 "갑"의 부담으로 한다.
- ③ 임대 물건의 자연 마모적 성격의 보수는 "을"의 부담으로 한다.
- ④ 임대 물건의 성능 및 구조안전 성능상 또는 부속 부대설비 보수는 "갑"의 부담으로 한다.
- ⑤ 임대 물건의 건물내부 소모성 자재 및 인테리어, 각종 비품, 기타 기설공급외 강전, 약전전력의 부설 또는 선전물 배부와 기타 설비의 시설 및 변조는 "갑"이 선 동의 하에 "을" 부담으로 한다.

제 12조【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】

"을"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"갑"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.

-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무실을 임대받는 경우
- ② 임대사무실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사무실을 전대한 경우
- ③ 임대차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단, "갑"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
- ⑤ 임대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을 "갑"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, 증축 또는 변경 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⑥ 임대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
- ⑦ 기타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제 13조 【소 송】

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"갑"과 "을"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, "갑"과 "을"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 14조 【특 약】

- ① 원상회복
 - 1. "을"이 임대사무실을 "갑"에게 명도하는 경우 "갑"은 임대사무실 및 그 내부시설물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이 경우 임대사무실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, 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"을"은 이를 원상 회복하거나 원상 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
 - 단,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마멸 또는 마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2. 전항에서 원상 회복되지 않을 경우, 정부 표준품셈(해당년도 기준) 및 시중노임 단가에 의거 금액을 산출하여 "을"로 하여금 납부하게 한다.
- ② 손해배상
- 1. "을"이 고의 또는 과실로 "갑" 또는 타 임차인등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"을"은 "갑"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15.